

문서 번호 : GS 건주 2018-2405 호

2018. 11. 27.

수 신 :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부

제 목 : 다산신도시 자연&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요청의 건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공급하는 “다산신도시 자연&자이(공공분양)”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5 조에 의거 기관추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3. 해당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아래 **붙임 2의 “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양식”**을 사용, **2018년 12월 24일(월) 오후 2시까지**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사업개요

공급 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건 택지개발지구 B-3 블록
공급 개요	아파트 지하 2층 ~ 29층, 7개동, 총 878세대
모집 공고	2018년 12월 20일 (예정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(<https://xi.co.kr/dasan>) 또는 대표번호(1544-5966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기관추천(대한체육회) 특별공급 배정세대수

주택형		74.0000	84.0000	계
배정세대 (예비추천)	우수 선수	1(1)	1(1)	2(2)

※ 타입별 구분 없이 각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택타입(84A, 84B, 84C)은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추첨시 해당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예정임.

※ 사업주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수(예비추천자 포함)를 배분 하였음.

※ 입주자 모집공고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4 조 제 5 항의 거주지역별 거주요건에 불구하고, 추천 대상자 및 예비추천자는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(가점 등)에 따라 배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18년 12월초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예정사항 반영)

※ 상기표의 ()는 예비추천자 배정세대수이며, 예비추천자는 순위를 미표기하여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업무담당자

- 박동수 과장 (HP : 010-6471-2797 / E-MAIL : akista@naver.com)

붙임 1. 다산신도시 자연&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.

붙임 2.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양식. 끝.

GS건설주식회사
대표이사 임 병 용



다산신도시 자연&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·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제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 를 충분히 안내,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급개요

공급 위치	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택지개발지구 B-3 블록
공급 개요	아파트 지하 2층 ~ 29층, 7개동, 총 878세대
입주예정월	2021년 06월 예정

2.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

주택형	74.0000	84.0000	계
배정세대(예비추천)	1(1)	1(1)	2(2)

※ 타입별 구분 없이 각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택타입(84A, 84B, 84C)은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추천시 해당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예정입니다.

※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: 미정(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)

3. 분양일정(예정) 및 유의사항

입주자모집공고	2018. 12. 20 (목) 예정
건본주택 개관	2018. 12. 21 (금) 예정
특별공급 접수	2018. 12. 26 (수) 08:00~17:30 예정
특별공급 접수방법	인터넷 청약 신청 -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(www.ap2you.com)
당첨자 발표일	2019. 01. 04 (금) 예정

※ 2018. 12. 20(목) 입주자모집공고를 예상한 분양일정으로 주택전시관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 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※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: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노약자 및 장애자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인터넷접수와 달리 신청서류 완비 및 접수시간이 상이(오전 10시~오후 2시)하오니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청약신청자께서는 반드시 건본주택으로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4.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5조 제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추천 통보를 하신 분
- 특별공급 입주자저축(청약자격요건)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5조 제 1항[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 등 제외]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※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횟수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.
- ※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의 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, 특별공급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첨에 의해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
- '세대'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(이하 주택공급신청자)과 다음 각목의 사람으로 구성된다.
가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
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-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란 ‘세대’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의 구성원(「주민등록법」 제 6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
 - 가.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 - 나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제 1항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 - 다.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“분양권등”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.
- ※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분양권 등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2018년 12월 초 예정) 이후에 취득한 경우 부터 주택으로 간주되며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.

-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 - ① 과거 해당제한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,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) 또는 “청약 조정 대상지역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해당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
 -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 아닌 자.(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)
 - 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55조에 의하여 제 35조부터 제 49조까지(기관추천, 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 특별공급 등)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. (첼거민, 이전기관종사자 제외)

- 당첨자 선정 방법
 -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함
 -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함[특별공급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불가]
 - ③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

4. 유의사항 안내

-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,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·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,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음.
-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함.
- 예비추천자는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한 주택형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추가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추첨 결과에 따라 추가당첨자 또는 예비순번이 결정됨. 이에 따라 예비추천자는 추가 당첨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음. (단 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함.)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신청자(세대원 포함)는 타 특별공급(다자녀 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)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, 계약 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.
- 남양주 다산진전지구는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과열지역으로 기본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유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급금액, 전매제한기간, 해당첨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, 팜플렛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.

다산신도시 자연&자이 위치도 / 주택전시관 약도 안내



현 장 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택지개발지구 B-3 블록
 주택전시관 :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72-3 번지 (남양주시청 2 청사 맞은편)

[붙임 2.]

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

주택형	구분	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비고
74.0000	추천자	1				
		2				
		3				
		4				
		5				
		6				
		...				
	예비추천자					
84.0000	추천자	1				
		2				
		3				
		4				
		5				
		6				
		7				
		8				
		9				
		10				
		...				
	예비추천자					

※ 본 양식은 추천자의 수에 따라 편집이 가능하나, 각 항목은 필수 항목이므로 삭제 시 접수 불가.